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73 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송갑석·박 정·안민석

임종성 · 이성만 · 인재근

이장섭 · 이용선 · 이규민

이개호・조오섭・정춘숙

김윤덕 · 최인호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술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· 수리·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,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원사업자가 수 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에서 '합리적인 노력'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「부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 법에 따른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에서도 '합리적인 노력'을 삭제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를

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5항)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5항 중 ""기술자료"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"를 ""기술자료"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~ ⑭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~ ⑭ (현행과 같
	음)
⑤ 이 법에서 "기술자료"란 합	① <u>"기술자료"란</u>
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	
유지된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	
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, 그	
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	
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	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자료를 말한다.	